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남해석 의원)

의안 번호	22-9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9. .

발의자 : 남해석, 강동오, 고병준,  
김승수, 신종갑, 이상원,  
최은하, 한선미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검사위원의 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시행령에 따라 마포구의회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규정함(안 제2조)

## 3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

## 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2. 9. 13. ~ 9. 19.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조 례 안: 붙임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, “1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있는”을 “있거나,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”으로, “사람으로 한다”를 “사람을 선임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)</p> <p>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<u>5명</u>으로 하고, 이 중 <u>1명</u>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<u>있는</u>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으로 한다</u>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)</p> <p>① ----- ----- -- <u>7명</u>----- <u>2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 <u>있거나,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</u> ----- <u>사람을 선임한다</u>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

#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##### ○ 비용발생 요인

- 결산검사위원 운영 수당 : 100,000원×7명×20일=14,000,000원
- 결산검사위원 여비 : 45,000원×7명×20일=6,300,000원

##### ○ 관련 조문

- 제10조(실비보상)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, 결산검사 종료 후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##### 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결산검사위원 수 2명 증가에 따른 수당 등 비용발생은 2022년 예산 기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마포구 의회사무국 조선영
연 락 처	02-3153-6175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